

2016년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2016년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요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근거 : 지침 제9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 지침 제1조, <별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 등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의 유효기간 : 지침 제9조
 -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지정 후 지정 취소시 제외)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지침 제13조

구분	인센티브(안)
성장사다리펀드	▶ 중소기업 M&A 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 완화
산은	▶ 중기특화 증권사 별도 펀드 조성 또는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
기은	▶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보 제공
신보, 기보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금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관련 한도, 기간, 금리 우대
기타	▶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전담 중개기관으로 선정

2. 신청자격 및 평가

□ 신청자격 : 지침 제1조, 제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 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
- 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16.1월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신청 불가

□ 평가기준 : 지침 <별표>, 부칙 제2조

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80)	중소·벤처 기업 기업금융 실적(80)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일수 가중평균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중소·벤처기업 IPO(기업인수목적회사 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 포함)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IPO 주관 중소·벤처기업 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IPO 총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유상증자 주관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채권 주관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채권 주관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채권 규모	5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거래 중개(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주관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규모	5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출자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총 투자액	5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 운용규모	5	
	정성 평가 (80)	전문인력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문인력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담조직	7.5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내부통제 장치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이해상충 방지 장치	7.5	
시장참여 의지 (50)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50	

※ 정량평가 반영 비율은 20%,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80%

□ **평가방법** : 1차 신청서 평가 →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 → 지정

*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음

3. 준수사항

□ **보고의무** : 지침 제11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지정취소

□ **지정취소 사유** : 지침 제12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보고한 중소·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16.2.18(목) ~ '16.3.3(목)

○ 지정회사 발표 : '16.3월말~4월초

* 지정회사는 5개사 내외이며(신청회사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위원회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추진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회사는 지침 및 공고문의 내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및 지정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3월 3일(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관련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및 PT자료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제출
- 우편제출시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3145-7583)으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